제3기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위원추천 계획

1. 대상기관(단체) 및 추천인원

(단위 : 명)

전문분야	추천	대상기관(단체)	추천인원		비고
			총 인원	여성 의무 추천	
학 계	교수	한국건설관리학회	2	0	
		대한건축학회	2	1	
		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	2	0	
		한국건축시공학회	2	0	
		한국집합건물법학회	2	0	
	연구원	한국건설기술연구원	2	0	
		국토연구원	2	0	
		주택산업연구원	2	0	
		한국건설산업연구원	2	0	
		한국주택관리연구원	2	0	
법 조 계	판사	대법원	2	0	
	검사	대검찰청	2	0	
	변호사	대한변호사협회	8	2	
		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	4	1	
건설업계	주택건설 공사	한국주택협회	4	0	
		대한주택건설협회	3	0	
	건설업	대한건설협회	2	0	
	건설용역업	대한전문건설협회	2	0	
		한국면진제진협회	2	0	
	감정평가사	한국감정평가협회	2	1	
주택관리	주택관리사	대한주택관리사협회	6	1	
기 술 계	건축사	대한건축사협회	8	2	
	기술사	한국기술사회(건축분야)	8	2	
	국가인력DB	안전행정부	약간명		
계					

※ 참고 : 위원구성 다양화계획에 따라 지방, 여성 우선 고려

2. 모집인원 및 임기

○ 인원 : 40명 이내

○ 임기 : 2년('13.6.19.~ '15.6.18.)

3. 주요업무

○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조정 및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

- 하자 여부 판정
-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·입주자대표회의·관리주체·관리단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의 조정
-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·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
- 집합건물(오피스텔, 사무소, 상가 등)의 하자판정 등

4. 자격요건(주택법 제46조의3 제2항)

구 분	전문분야	자격기준	비고
위촉직	학 계	-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	
	법 조 계	- 판사·검사로서 6년 이상 근무 중인 자	
		-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자	
	건설업계	- 건설공사, 건설업,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(건설회사의 임원 또는 감정평가사)	
	주택관리	-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	
	기 술 계	-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	
		- 「기술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관련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	

5. 결격사유 등

○ (결격사유)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모할 수 없음

-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(해촉사유) 위원으로 위촉한 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 함

-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-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
- 회의 출석율이 반기별 50%에 미달하는 사람
-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
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2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사람

6. 출석수당

○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함.

-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

[서식]

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위원후보 이력서

○전문분야 체크 : □법조계, □학계, □건설업계, □주택관리, □기술계

반명함 사 진 (2매)	성명	한글		성 별	남□ / 여□
		한자		주민번호	
	① 주 소				
	근 무 처	직장명 :		직위 :	
	휴대전화			E-mail	
②최종학력	학교명				
	전 공			학위	
	논문, 저술				
③자 격 증	자격명칭:			자격(등록)번호:	
	자격명칭:			자격(등록)번호:	
④경 력	해당하는 전문분야 종사경력 : 년 월				
수상내역					
특 기					
주요경력	기 간		내 용		비 고
구비서류	1.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2.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 3. 그 밖에 자격등의 심사에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				

2013년 월 일

본인 : (서명/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이력서 작성요령

1. 이력서는 반드시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흔글로 작성하여 제출
2. 이력서는 작성시 응모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모지 본인의 불이익이 됨
3.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

<< 작 성 요 령 >>

① 주 소 :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며,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하는 것임

② 최종학력 : 석·박사는 해당 학위논문을 꼭 기재하는 것임

③ 자 격 증 : 해당자만 기재하는 것임

○ 전문분야별 관련 "**자격증**"(해당자에 한함) 사본 1부

④경력사항 : 경력은 자격요건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임
(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첨으로 작성바람)

○ 다음의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"**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**" 1부

- 학 계 : 대학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
- 법조계 : 대한변호사협회(판사·검사는 제외) 등
- 건설업계 :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건설협회, 한국감정평가협회 등
- 주택관리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
- 기술계 : 대한건축사협회, 한국기술사회 등